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6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 박선원 • 박지원 • 채현일

주철현 · 정일영 · 노종면

신정훈 · 김문수 · 이재관

정성호 · 문금주 · 홍기원

양부남 • 정진욱 • 최민희

김승원 • 전용기 • 김 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 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

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 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③ 적국을 위하여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의무의 이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 2항의 형과 같다.
- ④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제98조제3항의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 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

제102조(준적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수집·누설·전달·중개(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
	<u>를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u>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u>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u> .
<u><신 설></u>	③ 적국을 위하여 국내・외 정
	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
	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
	나 또는 의무의 이행을 방해한
	<u>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u> 처한다.</u>
<u><신 설></u>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
	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
	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

第102條(準敵國)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 ·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누설한 자 도 제2항의 형과 같다.
- ④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제98조제3항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 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대 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 주한다.